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0023호

# 서울지방우정청 2025년 제2회 전문분야(안전관리)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서울지방우정청에서는 전문분야(안전관리)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임용직급 | 임용분야 | 근무예정기관 | 인 원 | 근무기간 |
|---|---|---|---|---|
| 한시임기제 8호 | 안전관리 | 국제우편<br>물류센터 | 1명 | 약 10개월<br>(임용일 ~ '26. 2. 2.) |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 임용직급 | 임용분야 | 주요 업무 |
|---|---|---|
| 한시임기제 8호 | 안전관리 |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br>- 해당 기관의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관리<br>- 위험성평가 및 위해요소 제거, 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br>- 현장 안전수칙 준수 지시·감독, 안전보건교육<br>-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관리, 보호장구 관리·보급<br>-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

※ **최초 공고(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0017호) 시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음**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4. 응시자격 및 요건

###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정년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응시요건 |
|---|---|---|
| 한시임기제 8호 | 안전관리 | ○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br>-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br>-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br>*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채용대상 직무와 관련된 안전관리 근무경력 |

### 다.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채용분야 | 구분 | 우대요건 |
|---|---|---|
| 안전관리 | 경력 | ㅇ 응시에 필요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초과한 경력 |
| | 자격증 | ㅇ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에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br>*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 위험물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2급,3급) |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실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예_주oo 시간), 직급(직위)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인 경우 반드시 근무시간 기재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의 경우 별도 표기를 해야 하며,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은 국내·외 국가, 지자체, 법인, 공공기관,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사업주)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재직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 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5.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1차)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 평가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 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 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 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 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 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6. 시험일정

|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 '25. 2. 18.(화) ~ 2. 28.(금) | '25. 2. 26.(수) ~ 2. 28.(금) | '25. 3. 10.(월) | '25. 3. 12.(수) | '25. 3. 17.(월) |

※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se

# 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2. 26.(수) ~ 2. 28.(금)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기준

○ 접수처: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채용담당

-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우편번호 03187)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익일특급 등기우편

- 등기우편으로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봉투 겉표지에 '안전관리 채용 응시원서 재중' 문구 표기**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교부예정
- **응시번호는 '25. 3. 6.(목)에 개별 휴대폰 SMS 통보 예정**

* 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나.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2) 1부

* 응시수수료: 한시임기제8호 5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3)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5)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응시자격요건상의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 확인서(해당자 한, 별지서식 6) 1부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한, 별지서식 7) 1부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또는 모호할 경우, 발급부서 확인(서명) 또는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업무분장내역(근무기간의 처음 및 마지막),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 학위 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해당자 한) 각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학교명은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우대요건상의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서식 8)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9)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① 해당 경력기간 4대 보험(고용보험 등)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② 해당 경력기간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 1부

## 8. 임용 시 근무조건

**가.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나. 근무기간**: 임용일('25. 3월 말) ~ 2026. 2. 2. (약 10개월)

※ 최종합격자의 임용서류 제출 등으로 근무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다. 봉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 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 8호 : 약 월 1,952,125원( 2025년기준/ 주 35시간 기준)

**라.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u>근무시간: 주 35시간 이내</u>,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 9.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증, 경력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번역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차. 기타 본 시험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10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bigwan1@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5. 3. 17. (최종합격자 발표일) ~ '25. 4. 16.

타.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파.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채용담당(☎ 02-6967-9141)

하.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붙임 2 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임용예정기관명(선발예정인원) |
|---|---|---|
| 안전관리 | 한시임기제 8호 | 국제우편물류센터 (1명) |

| | |
|---|---|
| 주요 업무 |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br>○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br>○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해요소 제거<br>○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지시·감독, 현장 순회점검 및 위해요소 개선<br>○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br>○ 운송용기 등 일반적 위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관리, 보호장구 관리·보급<br>○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br>○ 그밖에「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8조에 따른 업무<br>○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처리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br>○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br>○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력, 창의력, 집행관리능력, 대인관계 등 |
| 필요 지식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 관련 지식 등 법령 관련 지식<br>○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 지침에 관한 이해와 지식<br>○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필요한 지식 |

| | | |
|---|---|---|
| 응시자격요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
| | **관련분야 : 안전관리** | |
| | 자격·경력 |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충족**<br>-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br>-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br>*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채용대상 직무와 관련된 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 |
| 우대요건 | | ○ (경력) 응시에 필요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초과한 경력<br>○ (자격증)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에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br>*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 위험물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2급,3급) |

<별지서식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분야<br>(근무예정기관) | 직급 | 응시자격요건 |
|---|---|---|---|---|
| | | 안전관리<br>(국제우편물류센터) | 한시임기제 8호 | □ 자격·경력 |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 목 록 | 필수여부 | 제출여부 |
|---|---|---|
| 1. 응시원서 | 필수 | □ |
| 2. 이력서 | 필수 | □ |
| 3. 자기소개서 | 필수 | □ |
| 4. 직무수행 계획서 | 필수 | □ |
| 5. 응시요건상의 자격증 사본 | 필수 | □ |
| 6. 주민등록초본(원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필수 | □ |
| 7. 경력(재직)증명서 | 해당자 한 | □ |
| 8.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경력) 확인서 | 해당자 한 | □ |
| 9. 학위증명서 사본 | 해당자 한 | □ |
| 10. 우대요건상의 자격증 사본 | 해당자 한 | □ |
| 1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 □ |
|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 |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표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2>

#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지방우정청 주관 2025년 제2회 전문분야(안전관리)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 | | | |
|---|---|---|---|
| ※응시번호 | | 성명 | |
| 응시직급<br>(응시분야) | 한시임기제 8호<br>(안전관리) | 채용예정관서 | 국제우편물류센터 |
| 생년월일<br>(주민번호앞자리) | | 복수국적 | |
| 주 소 | (우 ) | | 정부수입인지<br>붙이는 곳<br>(전자수입인지는<br>별도 첨부) |
| 전자우편 | | | |
| 휴대전화 | | | |

(甲)

| | | | |
|---|---|---|---|
| ※응시번호 | | **응시표**<br>**2025년 제2회 전문분야(안전관리)**<br>**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
| 응시직급<br>(응시분야) | 한시임기제 8호<br>(안전관리) | 성 명 | |
| 채용예정관서 | 국제우편물류센터 | 생년월일<br>(주민번호앞자리) | |
| 2025년 월 일<br>서울지방우정청장 ㊞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응시분야) : **한시임기제 8호(안전관리)**

3. 채용예정관서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관서 기재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등을 통해 구입하여 첨부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 전자 정부수입인지 가능 (한시임기제8호: 5천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3>

# 이 력 서

| 1. 공통사항 | | | | | |
|---|---|---|---|---|---|
| ※응시 번호 | | 응시직급 (채용예정관서) | 한시임기제 8호 (국제우편물류센터) | 성명 | |

| 2. 응시자격 | | |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등록)번호 |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 관련분야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팀장* | *상세히 작성* |
| | | ** 응시에 필요한 경력* | | |
| | | | | |
| 3. 우대사항 | | | | |
| 관련분야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팀장* | *상세히 작성* |
| | | ** 응시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는 경력* | | |
| | | | | |
| 관련분야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등록)번호 |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 본인이 직접 자필 또는 워드작성가능하며 작성자는 자필로 이름과 서명 기재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학력, 경력, 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이용 가능(경력증명서 반드시 첨부)

<별지서식 4>

#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응시직급 및 분야 | 한시임기제 8호(안전관리)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5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별지서식 5>

# 직무수행 계획서

| 성 명 | | 응시직급 및 분야 | 한시임기제 8호(안전관리)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3매(총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본문은 휴먼명조 13포인트)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5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별지서식 6>

#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경력) 확인서

## □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 근무기관 (부서 포함) | 근무기간 | 근무일수 | 직위(급) | 담당업무 |
|---|---|---|---|---|
| 1. ○○기업 ( 과) | 18.0.0 ~ 20.0.0 | 00년00개월00일 | 과장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
   ※ 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2.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자료 등(업무분장내역(근무기간의 처음 및 마지막), 인사기록카드 등) 증빙자료 첨부
3.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4. 담당업무는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지서식 7>

제2025- 호

# 경 력 (재 직 )증 명 서 (예 시 )

| | | | | | |
|---|---|---|---|---|---|
| 인적사항 | 성명 | 한 글 | |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 . . . |
| | | 한 자 | | | |
| | 주 소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
| | 부 터 | 까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연한 | 년 월 | 최종직위 또는 직급 | |
| 퇴직사유 | | | |
| 용 도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출용 | | |
| 회사소재지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 또는 회사명(관인 또는 회사대표자인)

| | |
|---|---|
| 작성담당부서 | |
| 작성책임자 | |
| 작성담당자 | |
| 연락처 | |

※ 기재된 사항이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별지서식 8>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
|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 공무원 채용 관리 |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 공무원 채용 관리 |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서식 9>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지방우정청이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서식 1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